# 수도용 자재 및 제품,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(KC) 전면 시행



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가 지난 1월 26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는 시공업자는 미인증 제품으로 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.

'수도법' 제14조 및 환경부령 '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등에 관한 규칙' 제2조에 따라 물 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, 수입, 공급, 판매코자 하는 자는 '위생안전기준 인증(KC)'을 취득 후 제조, 수입, 공급, 판매해야 하며 위반 시 '수도법' 제83조, 제87조에 근거한 벌칙을 적용받게 된다. 또한 일반수도 및 전용 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도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'수도 법' 제14조제3항에 의거하여 '위생안전기준 인증(KC)'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위반 시 '수도법' 제83조에 근 거한 벌칙을 받는다. [편집자 주]

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인증(KC) 적용 제품은 지난 2011년 5월 26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해 지난 1월 26일부터는 전 품목으로 확대되어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. 이에 따라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코자 하는 기계설비시 공업자는 미인증제품으로 시공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.

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과 인증대상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을 다음과 같다

### 수도법

제14조(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) ① 수도 시설(취수·저수·도수시설은 제외한다)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 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 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.

-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·수입·공급·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·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·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,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 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 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.
-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

여서는 아니 된다.

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, 인증의 방법·절차, 검사기관의 지정, 수수료와 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〈전문 개정 2010.5.25〉

## 수도법 시행령

제24조의2(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)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〈개정 2011,10,28, 2011 11 23〉

- 1. 「산업표준화법」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
- 2. 「산업표준화법」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 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 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
- 3. 「산업표준화법」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 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
- 4. 「환경기술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
- 5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의2 및 제16조 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 은 제품
- 6. 삭제〈2011.11.23〉
- 7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
- ①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

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 으로 사용할 수 없다

〈본 조 신설 2010. 11.26〉

**제83조(벌칙**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다. 〈개정 2010.5.25〉 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. 〈개정 2010.5.25〉

- 1.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 하을 위반한 자
- 1의2.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 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· 수입 ·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
- 1의3.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 니하거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 나 제품을 사용한 자
- 1의4.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 를 한 자 🗘

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 증표시를 한 자

제87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

- 1.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
- 2. 삭제〈2010.6.8〉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〈개정 2010.5.25, 2011.7.28,2011.11.14
- 1.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수 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· 수입 · 공급 또는 판매한 자
- 2.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지 아 니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표시

#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 범위

2011년 5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

구분	인증대상
수도관	주철관류

#### 2011년 11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

구분	인증대상
수도관	주철관류
	그 밖의 금속관류
	합성수지관류

#### 2012년 5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

구분	인증대상
수도관	주철관류
	그 밖의 금속관류
	합성수지관류
기계 및 게측 · 제어용 자재 및 제품	밸브류 펌프류 수도꼭지류 유량계류 수도미터류

#### 2013년 1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

구분	인증대상
수도관	주철관류
	그 밖의 금속관류
	합성수지관류
기계 및 게측 · 제어용 자재 및 제품	밸브류 펌프류 수도꼭지류 유량계류 수도미터류
도료 등 그 밖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	<ul> <li>콘크리트 수조, 강제 수조 및 현장시공에 의한 관등의 안쪽 면에 사용되는 도료</li> <li>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정수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</li> </ul>

※ 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정보망(http://www.kctap.or.kr)을 통해 인증제품 검색 가능.

※ 한국상하수도협회 위생안전인증팀: 02-3156-7782 ※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도정책과: 044-201-7123